

이사회 운영 규정

제1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코오롱플라스틱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의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(의장)

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 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

제3장 회 의

제 6 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(매분기 4월, 7월, 10월, 1월의 제3수요일)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.
- ② 당사 정관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이사회 소집에 이를 준용 한다.
- ③ 이사 전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자로부터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, 그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
- 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3) 재무제표의 승인
- (4) 정관의 변경
- (5) 자본의 감소
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7) 주식의 소각
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0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(13) 주식배당 결정
- 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5) 이사·감사의 보수
- (16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(17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- (3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5)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6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(9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(10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
- (12) 급여체계, 상여 및 후생제도

- (13)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
- (14)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
- (15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- (16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17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18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투자에 관한 사항
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(4) 결손의 처분
- (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(6) 신주의 발행
- (7) 사채의 모집
- 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9) 전환사채의 발행
- 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1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
4. 이사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2) 타회사의 임원 겸임

5. 기 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
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-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1조 (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사항)

- ① 회사가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, 일정금액의 경우 매출액의 10% 수준으로 한다.
- ②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연초에 1회 이사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사전원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한다.
- ③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긴급집행)

-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,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 사장은 이를 사전 집행하고 최단 시일 내에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전①항의 경우 이사회가 긴급집행 사항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그 시간 이후의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제 13 조 (감사의 출석)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13 조의 2 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내용 및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회사에 비치한다.
- ②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

- ③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

제 16 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와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(경영기획담당 부서장)이 되며,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지원을 담당한다.

부 칙

제1조 (제정일) : 1998년 7월 7일

제2조 (개정일) : 2005년 3월 28일

제3조 (개정일) : 2010년 11월 1일